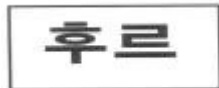


[상표분쟁]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+ 정당사용 인정여부: 특허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

허7548 판결



## 1. 사안의 개요




등록상표 표장:

지정상품: 학생복, 셔츠, 블라우스

상표권자 원고 2013년경부터 학생복 셔츠, 블라우스 등 제조판매업 영위

사용된 표장 및 현황: 상표권자는 2014년경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“”,

“” 등의 표장이 부착된 교복 셔츠, 블라우스 등의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하였고,

2014. 8. 21. 인쇄업자에게 원고가 제조·판매하는 셔츠, 블라우스 등 교복을 광고하기 위

해 “**HUR[후르]**”라고 표시된 홍보전단지의 제작을 의뢰하여 전국의 교복판매점에 배포하였음

2. 불사용취소심판 2016당735 심결 : 정당사용 불인정 + 상표권 취소청구 인용심결

3. 특허법원 판결요지 - 정당사용 인정 + 심결취소

광고지에 표기된 “**HUR[후르]**” 중에서 한글로 된 “**후르**” 부분은 원고가 제조·판매하는 셔츠, 블라우스 등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,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표장은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고 외관이 매우 유사하며, 식별력이 극히 미약한 직사각형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광고지에 표기된 표장이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첨부: 특허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허7548 판결

변리사 23년/변호사 15년, 심판소송, 상표/디자인/저작권/부정경쟁분쟁, One-Stop 대응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